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4. 2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4. 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나. 주요골자

- 도서관 출입자 중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함(안 제7조 제1호)
- 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입관 후에는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 자료복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존장부를 폐지하고 적의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립도서관의 명칭 정리 및 번지의 지번이 변경되었기 관련사항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2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 주요골자

- 도서관 출입자 중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함(안 제7조제1호)
- 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입관 후에는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 자료복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존장부를 폐지하고 적의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립도서관의 명칭 정리 및 번지의 지번이 변경되었기 관련사항 개정(별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

제7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일단"을 삭제하여 본문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복사) 관장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복사료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비디오테이프·컴퓨터디스켓 등 저작권보호대상자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2조(복사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료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시장은 복사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조 내지 제22조를 제13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14조의 제목을 “기능”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명 칭	위 치
본 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번지
분 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480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생략) 1. (생략) 2. <u>도서의 열람 및 잠서관리</u> 3.~5. (생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도서의 열람·대출 및 잠서관리</u> 3.~5. (현행과 같음)
제7조(입관거부) (생략) 1. <u>연령이 7세 미만의 자. 다만, 보호자 또는 성인과 동행하는 어린이 제외</u> 2.~4. (생략) 5. <u>관장의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제7조(입관거부) (현행과 같음) (삭제) 1.~3.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삭제)
제9조(도서관 출입제한) ① <u>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입관 후에는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u> ② <u>일단 입관한 자가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관할 때에는 입관표를 재교부받고 좌석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u>	제9조(도서관 출입제한) (삭제) 입관한 자가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관할 때에는 입관표를 재교부받고 좌석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복사) ①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해 줄 수 있다.

②제1항에서의 "자료의 복사"라 함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1.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 2.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 3. 기타의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판단하는 자료

제12조(복사제한) 자료의 복사는 원칙적으로 부분 복사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사료)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치장부) 도서관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복사작업일지(별제 제1호서식)
- 2. 복사소모품 사용일지(별제 제2호서식)
- 3. 복사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구성) (생략)

제16조(직무) (생략)

- 1.~7. (생략)

제17조~제22조 (생략)

제10조(자료의 복사) ①관장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복사료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 2. 카세트·비디오테이프·컴퓨터디스켓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

제12조(복사재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료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시장은 복사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13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4조(기능) (현행 제16조와 같음)

- 1.~7. (현행과 같음)

제15조~제20조 (현행 제17조 내지 제22조와 같음)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복사작업일지

연월일	신청인		자료명	규격	수량	결재	
	주소	성명				담당	관장

(별지 제2호서식)

복사소모품 사용일지

연월일	품명	규격	수(1)	급(2)	잔(1-2)	결재	
						담당	관장

(별지 제3호서식)

복사료수납대장

연월일	계	규격				결재	
		A4	B5	A3	B4	담당	과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구 분	명 칭	위 치	구 분	명 칭	위 치
본 관	부천시 시립중앙도 서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3-14, 15번지	본 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번지
분 관	부천시 시립중앙도 서관 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산7-18번지	분 관	부천시 시립중앙도서 관 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562-480번지